

제349회 임시회
2016. 7. 13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6.12.26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 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('16. 12. 27 ~ ' 19. 12. 26)
- 위 치 : 충청북도 소재
- 수탁기관 :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
※ 現 수탁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(센터장 이상수, '13. 12. 27 ~ ' 16. 12. 26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 업 비 : 589백만원(국비 70%, 도비 30%) *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- 치매관리사업 계획, 치매 연구 및 조사
 -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

한 기술지원

- 치매관련 시설·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-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-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-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

5. 검토의견

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 내용

-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‘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’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「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-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- ‘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 선정공고를 하고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충실도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한 뒤, 3년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, 이는 법령에 따른 절차 및 내용으로 타당함.

○ 종합 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- 민간 위탁은,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,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,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임.
-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, 치매연구 및 조사,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, 치매상담 등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,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를 민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,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위·수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, 치매유병률('15)을 보면, 충북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.6%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전국 평균 9.8%보다 높은 수준으로, 시·군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충청북도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음.
- 이에, 충청도에서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,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탁 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 인권 및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·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참고자료>

□ 충청북도 치매환자 관리 현황

(단위 : 명)

| 시군명 | 치매환자 등록인원 | 시군명 | 치매환자 등록인원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총 계 | 9,636 | | |
| 청주시 계 | 2,315 | 기타 시군계 | 7,321 |
| 상당구 | 593 | 충주시 | 1,403 |
| 서원구 | 621 | 제천시 | 720 |
| 홍덕구 | 505 | 보은군 | 834 |
| 청원구 | 596 | 옥천군 | 795 |
| | | 영동군 | 1,024 |
| | | 증평군 | 382 |
| | | 진천군 | 733 |
| | | 괴산군 | 558 |
| | | 음성군 | 594 |
| | | 단양군 | 278 |

※ 충청북도 유병율(10.6%) 대비 추정 환자수 : 23천명